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2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5,320원, 농어촌특별세 530,380원, 지방교육세 42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2

가. 원고는 '사회소외계층의 원조 및 사회사업', '해외선교사업 및 매체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15. 11. 9. [redacted]시 B 지상에 건물(지상 2층, 연면적 153,1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종교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반적인 주거공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감면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2015. 11. 13. 원고에게 취득세 7,425,320원, 농어촌특별세 530,380원, 지방교육세 424,3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부, 수도사, 수녀의 거주 및 기도 등 종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2

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2

① 원고는 2011.경 C교구 교구장 D 주교의 승인을 받아 원고 소속 성직자, 수도자를 파견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주 E에서 평화운동과 지역 복음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C교구와의 협력 아래 제주 E에 F(G성당 소속으로 미사가 거행되는 준성당)과 H를 건립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 소속 파견 성직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불편이 있게 되자 그 활동의 안정을 위하여 2014. 9.경 C교구 교구장에게 보고한 후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입하였다.

③ 한편, 원고 소속 I는 제주 E에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수도원 분원을 설립하기로 하여 2015. 6. 2. C교구의 동의를 받고 같은 날 착공신고를 하여 2015. 11. 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는 수도원 분원으로서의 'J' 설립을 인가받았다.

④ 이에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건물을 수도원 용도로 하여 보통재산 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2016. 1. 1. K 신부를 'J' 초대원장으로 임명하고, 2016. 1. 14. 이 사건 건물 내 성체봉안소 설치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K 신부 외에 L 신부, M 수사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주로 성직자 등의 인적구성원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 원고는 평화운동 및 지역복음화 활동을 제주 E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제주 E에 파견된 성직자, 수도사들은 원고의 위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보이고, 그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서도 숙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원고가 그 사업을 위하여 C교구와 협력하여 제주 E에 성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2

의 역할을 하는 F와 H를 건립하였으므로, 원고 소속 성직자, 수도사의 숙소가 필요하고, 실제 그 숙소를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민선

판사 장수진

판사 김기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